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기 획 재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직종의 명칭·직종수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임 적용방법에 대한 회계통첩

1.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95년)된 대한건설협회(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가 통계청의 승인('09.7.22)을 받아 건설직종의 명칭 및 직종수를 조정하여 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10.1.1)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기관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도 다음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수조정율(K)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지수(A)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으로 함

○ 대한건설협회가 기존 145개 직종중 일부를 통합·폐지·신설하여 117개 직종에 대한 노임으로 공표함에 따라 '10.1.1 전후 “직종부문 평균노임” 간 직접비교가 곤란하므로

○ 노무비지수(A)는 변경된 117개 직종을 기준으로 '10.1.1 이전 평균노임을 재산정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평균임금표(8. 평균임금현황 【주】2)상의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 적용

나.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①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②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③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④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참고사항

-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 시험사, S/W 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기타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0.1.1) 참조

④ 예시

<갱부(통합후 소멸된 직종) 품목조정률 산정시 등락율>

- 계약일시 및 당시 갱부노임 : ' 09.4.1, 69,527원(' 09.9.1 이후 69,594원)
- * 갱부의 직종부문은 '일반공사'
: ' 09.9.1 이후 평균노임 111,664원, ' 10.1.1 이후 평균노임 114,847원
- 물가변동당시 갱부노임
= 69,527 x [1+{(69,954/69,527)-1}+{(114,847/111,664)-1}] = 71,935원
- 갱부노임 등락율 = (71,935 - 69,527) / 69,527 = 0.0346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주무관 **류남욱** 사무관 **박창규**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회계결산심의관 **신형철**
 ★국고국 국장 **유재훈**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542 (2010. 04. 05.) 접수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 02-2150-4616 전송 02-503-9270 / jknamu@mosf.go.kr / 대국민공개